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탑승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전주온빛중학교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탑승 금지 안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탑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고 아직도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만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GCOOTER의 경우 휴대전화 앱에 운전면허 번호를 입력해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면허번호를 중복으로 입력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SWING의 경우 면허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지만 업체의 이용 약관에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더라도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지키며 1인만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용에 관한 접근이 쉽기 때문에 자신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위반**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최근 학생생활교육위원회(2022. 10. 13. 전체회의)를 통해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탑승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등교지도와,**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탑승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적 지도 및 징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관련 언론보도 사항>

- ◆면허도 안전모도 없이 ‘쿵’..무법천지 전동킥보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SUV와 그대로 충돌(MBC, 8.8.)
- ◆전동 킥보드 한 대로 올림픽대로 달리던 고등학생 2명 입건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초과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MBC, 7.24.)
- ◆전동킥보드 사고, ‘중학생 3명’ 신호위반 후 좌회전 승합차와 충돌 지난 9월30일 헬멧을 쓰지 않은 학생 3명이 한 개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타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 발생



알고답시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01

무면허 운전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가능)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자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3만원

04

보행자 보호
불이행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5

지정차로 통행위반



등화점등 불이행
발광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06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2023. 3. 27.

전 주 온 빛 중 학 교 장